

의안번호	2218088
의 퇴 인	염태영의원
회 답 일	2026.4.27.
추계번호	26B189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4조제9항 및 제10항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 해당 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 등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구축·운영하거나 이용하는 시스템(이하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공사대금 [선금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청구·지급·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 자재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등(이하, “하수급인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공사대금 청구·지급의 방법, 기준, 절차 및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제9항)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건설공사	의무규정
		발주자는 제9항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계좌를 거치지 않는 방식 등으로 하수급인 등에게 청구내용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하여 지급하여야 함(제10항 신설)	의무규정
2	안 제34조제11항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항제2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11항 신설)	재량규정
3	안 제68조의3제7항 신설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설기계 대여대금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발주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경우는 제외한다)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7항 신설)	의무규정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	안 제34조제9항 및 제10항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34조제11항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3	안 제68조의3제7항 신설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2. 상세 사유

가. 하도급대금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안 제34조제9항 및 제10항)

- 개정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외에도,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민간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제1항에 따른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지급·수령하도록 의무화하고(안 제34조제9항), 해당 공사의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계좌를 거치지 않는 방식 등으로 하수급인등에게 지급될 수 있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안 제34조제10항), 일정 규모 이상인 민간 발주 건설공사의 시스템 이용 증가에 따라 추가적인 시스템 개선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그런데 개정안의 적용 대상이 되는 민간 발주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에 위임되어 있어 현시점에서 그 기준금액과 이에 해당하는 대상 물량을 예측하기 어렵고, 시스템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은 개정안의 시행

에 따라 시스템에 요구되는 기능의 범위와 내용, 연계 방식,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여부 및 재원부담 구조 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현시점에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다만, 현재 공공발주 건설공사의 경우 조달청이 구축·운영하고 있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 ‘하도급지킴이’를 활용하고 있으며, 조달청은 민간부문의 하도급지킴이 이용증가에 따라 시스템 정비를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사업 ‘하도급지킴이 민간 이용 확대를 위한 시스템 고도화 ISP’ 사업에 예산 3억원을 편성하여 추진중임 ([참고자료])

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따른 지급보증서 발급비용 지원(안 제34조제11항 및 제68조의3제7항)

-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건설공사에서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 대금을 청구·수령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기계 대여대금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시행할 경우 지방비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런데 개정안에 따른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비용 지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될 사항이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비용 지원의 경우 시스템 이용 의무 대상이 되는 민간 공사의 범위도 향후 국토교통부령에서 결정될 사항이므로 현시점에 적용 대상 공사의 규모, 공사 물량, 건설기계 대여계약 건수, 대여대금 규모 등이 불확정적이어서 지급보증서 발급비용과 지원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를 현 시점에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문지은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문지은	02-6788-4645	mtsophia@nabo.go.kr

[참고자료 1] 하도급지킴이 민간 이용 확대를 위한 시스템 고도화 ISP 사업개요

조달청 제출자료

□ 사업개요

- (목적) 민간의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정부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부문에서 활용 중인 ‘하도급지킴이’의 민간 부문 이용 확대 필요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대책’(25.9.2)

발주자와 하도급 노동자 간 직접 임금이 지급 될 수 있도록 공공 부문에서 시행 중인 ‘전자대금 지급시스템*’을 민간 부문에도 적용 확대·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

* 하도급지킴이(조달청), 상생결제시스템(중기부), 체불e제로(철도공단) 등

- 공공 부문의 하도급거래 문화 개선과 경제적 약자 권익보호를 위해 운영 중인 (‘13~)‘하도급지킴이*’붙임2 참조를 민간 부문에도 이용·확산 필요
-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SW용역 계약의 하도급계약 체결, 공사대금(원·하도급 및 자재·장비대금, 노무비) 청구·지급 등의 전자적 처리·모니터링 지원
- ** 건설 공사대금 전자지급시스템 이용을 민간 공사까지 확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추진 중(‘24.8.12 임태영 의원, ‘24.9.23 윤종오 의원 각각 대표 발의)
- (필요성) 공공 부문 이용에 최적화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민간 부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구조 및 기능 개선 등 고도화 필요
 - 민간 부문 이용자 환경에 부합하는 맞춤형 기능 개선
 - * 민간개방에 따른 사용자의 구조변경으로 민간 발주자의 사용자 등록 및 권한, 민간 공사계약 등록부터 하도급계약, 대금지급까지의 프로세스 신규 구현
 - 시스템 인프라 강화*, 민간분야의 데이터 유출 방지와 시스템 안전성을 우선한 장비 확충, 공공발주자와 분리된 독립적 인프라 구축
 - * 대규모 사용자 유입과 데이터 처리 증가 대비
 - ** 건설공사 규모는 공공 부문 대비 민간 부문이 약 2.3배 수준(‘24년 건설공사 계약 : 공공 77조원, 민간 175.5조원)

- (내용) 민간 사용자 등록·관리, 계약 및 지급 기능 확장, 시스템 인프라 확충, 운영 안정성 확보 등 민간 이용 확대를 반영한 하도급지킴이 고도화

①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의 전면적인 기능 개선

- 민간 맞춤형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권한 관리 개발
 - * 다양한 사용자 유형**을 지원하는 모듈 개발, 각 유형별 권한(계약 등록, 대금 청구, 모니터링)을 세밀하게 설정을 통한 민간기업의 유연한 이용 가능
 - ** 민간 발주기업, 원도급사, 하도급사, 자재장비업체, 근로자 등
- 계약 및 대금 지급 기능 확장
 - * 민간 계약의 다양성을 반영한 계약 등록 기능 개발(수기 등록 지원, 전자계약 연계 등록 등)
 - ** 대금 지급 방식 다각화(현금, 전자어음 등)와 실시간 모니터링 대시보드 개발, 직불 합의 시 자동 지급 기능 강화
- 데이터 분석 및 통합 기능 개발
 - * 빅데이터 및 AI 기반 대금 지급 예측, 계약 추천 기능 추가, 민간 데이터와 공공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오픈 API 개발
 - * 실적증명 발급 및 전자 계약 체결 기능을 민간에 최적화하여 불공정 거래 감지 알 고리즘 도입
- 보안 관련 기능 개발
 - * 데이터 암호화(TLSSSSL, 블록체인) 및 다중 인증(MFA) 모듈 개발, 온라인 용역 통제 시스템(자료 유출 차단) 구축
 - * 취약점 점검 및 모의 해킹 테스트를 위한 자동화 도구 개발

② 시스템 인프라 강화*, 민간분야의 데이터 유출 방지와 시스템 안전성을 우선한 장비 확충, 공공발주자와 분리된 독립적 인프라 구축

- * 대규모 사용자 유입과 데이터 처리 증가 대비
- 서버 용량 증설 및 클라우드 전환 고려

- * 서버 용량 증설 및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예: AWS 또는 국내 클라우드) 도입으로 트래픽 증가 대응, 비대면 수요를 고려한 고가용성 클러스터 구축
- * 데이터 저장소 분리 및 백업 시스템 강화로 민간 기업의 대량 데이터 처리 지원

－ 네트워크 및 보안 장비

- * 화이트리스트, 방화벽, 침입탐지 시스템(IDS) 등 보안 장비 확충, 국가정보보안 기 본지침 준수를 위한 물리적 서버 분리 / 민간 기업의 원격 접근을 위한 VPN 및 전용 단말 통제 장비 도입

－ 테스트 및 모니터링 장비

- *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테스트 서버 및 모니터링 도구(예: 로그 분석 시스템) 확충, 정기 업데이트를 위한 자동 패치 장비 도입

－ 사용자 지원 인프라

- * 헬프데스크 및 고객센터 장비(콜센터 시스템, 온라인 채팅 도구) 확충, 교육 프로그램 을 위한 Zoom 기반 온라인 강의 인프라 강화

③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인력 확충(IT프로젝트관리 및 응용SW개발)

□ 요구사항

- 민간 부문 이용 확산을 위한 하도급지킴이 고도화 구축 계획수립(ISP)을 위한 용역비 : 304백만원
- * ('26) ISP사업 → ('27~'28.上) 기능 개선 → ('28.下) 개통(예정)

□ 증액 필요성

- 민간의 구조적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강력한 정부 대책의 적극 이행차원에서 민간 이용을 위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고도화 추진 시급
- * 하도급거래 문화 개선과 경제적 약자 권익보호

□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고도화 ISP 산출 내역

○ 컨설팅업무량에 의한 방식(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024)

정보전략계획수립비									
(금액:원)									
업무		가중치	해당여부 (O, X)	총업무 가중치	업무 요소	난이도	해당여부 (O, X)	난이도 계산	
소요제기	경영환경 분석	3.5	X	40.8	업무규모 (단순)	0.7	X	0.60	
	정보기술 환경분석	3.7	O		업무규모 (보통)	1.0	O		
	제도/규정 분석	2.0	O		업무규모 (복잡)	1.3	X		
현황분석	경영전략 분석	2.8	O		업무의특성 (단순)	0.6	X		
	업무분석	6.1	O		업무의특성 (보통)	1.0	O		
	정보시스템 분석	6.1	O		업무의특성 (복잡)	1.4	X		
	벤치마킹	2.5	X		기존시스템 (단순)	0.7	X		
	차이분석	2.0	X		기존시스템 (보통)	1.0	O		
목표모델 수립	정보화 전략 수립	3.3	X		기존시스템 (복잡)	1.3	X		
	정보시스템 구조 설계	5.0	O		ISP 유형 (보통)	1.0	O		
	정보관리 체계수립	3.8	O		ISP 유형 (복잡)	1.4	X		
	제도/규정 개선안 수립	2.5	X		정보자원규모 (단순)	0.6	O		
이행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3.8	O		정보자원규모 (보통)	1.0	X		
세부계획 작성	소요예산 산출	3.5	O		정보자원규모 (복잡)	1.4	X		
	기대효과 산정	2.5	X						
	제안요청서 작성	4.0	O						
컨설팅업무량 계산 (가중치 x 난이도)						24,480			
ISP 단가(2025년)						11,290,936			
직접경비						0			
정보전략계획 수립비						276,402,113			
정보전략계획 수립비 (부가세 포함)						304,042,325			

[참고자료 2] 전자대금시스템 하도급지킴이 사업개요

조달청 제출자료

□ (개요) 공공사업(건설공사 및 SW용역) 수행시 발생하는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 * 대금 청구·지급(원·하도급 및 자재·장비대금, 노무비 등), 하도급계약 체결 등

□ (목적) 하도급거래 문화 개선과 경제적 약자 권익보호를 위해 구축·운영('13~)

○ 공공 발주 건설공사·SW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모니터링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하도급계약 체결, 공사대금(원·하도급 및 자재·장비대금·노무비)

○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전자조달법제9조의 2에 근거

□ 주요 기능 및 이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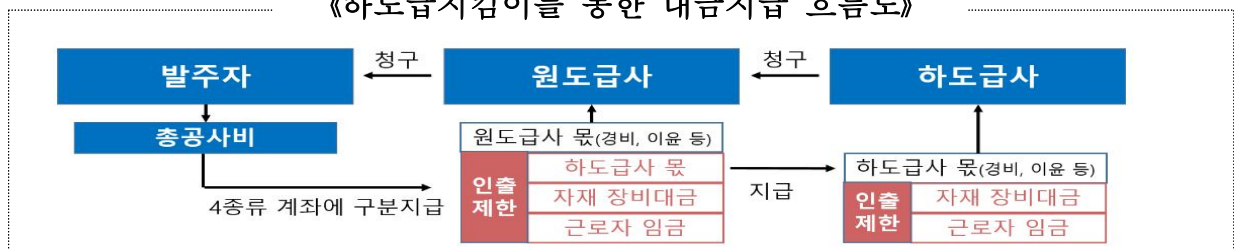
○ 나라장터 등록 수요기관을 대상, 공공 건설공사는 의무¹⁾·SW용역은 임의 이용, 전자계약²⁾·대금지급³⁾·실적증명서 발급 등

1)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 건설공사

2) 원도급계약 등록(나라장터), 하도급계약 체결(표준하도급계약서),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 등

3) 대금 청구 및 지급, 약정계좌 관리, 선금 사용 내역 관리 등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대금지급 흐름도》



○ '24년 11,550개 기관, 90,295개 업체, 대금지급 실적 66.6조원

* '14년 구축 당시 대비 기관 47배, 업체 58배, 대금지급 실적 220배 성장

** '14년~'24년 누적 대금지급 실적 339.8조원

♣(성장요인) 건설공사 이용 의무화¹⁾ 및 대금지급 시스템 일원화²⁾ 노력

1) 공공 건설공사 도급업체('19년) 및 발주기관('20년)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의무화

2) 서울시 '대금e마로'('21년),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22년), 강원도 "강원대금알림e"('23년) 하도급지킴이로 이용 전환